

천안 아이파크 시티 6단지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66-012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2.20(금)	26.04.01(수)	26.04.06(월)	26.04.09(목)	26.04.11(토) ~ 26.04.12(일)	26.04.16(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0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74**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2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15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4.06(월)	26.04.09(목)	26.04.11(토) ~ 26.04.12(일)	26.04.16(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상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

- 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2022.12.31. 개 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 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전매제한기간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9-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4~35층 9개동 총 1,066세대, 임대분양 제외 1,012세대 중 계약 이후 잔여 385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74	01	084.8786A	84A	72	601	201, 301, 501, 701, 1101, 2301, 203, 303, 403, 503, 603, 703, 1403
					604	201, 301, 401, 501, 601, 701, 1001, 1401, 1801, 202, 302, 402, 502, 602, 702, 802, 902, 1202, 1902, 2202, 204, 304, 404, 504, 604, 1504, 1704, 1904, 2204
					605	203, 303, 403, 503, 703, 1203, 1403, 2103, 2303, 2603, 205, 305, 405, 705, 805, 1305
					609	203, 303, 503, 703, 803, 1503, 205, 305, 405, 505, 605, 905, 1805, 3205
	02	084.9323B	84B	77	601	202, 302, 402, 502, 602, 802, 902, 1002, 1302, 1402, 1502, 1802, 1902, 2202, 2302, 2502
					604	203, 303, 403, 503, 603, 803, 1003, 1103, 1203, 1403, 1603, 1703, 1903, 2003, 2203, 2303, 2603
					605	204, 304, 404, 504, 604, 704, 904, 1004, 1104, 1204, 1304, 1704, 1804, 2004, 2104, 2404, 2504, 2704, 2904
					609	204, 304, 404, 504, 604, 804, 904, 1004, 1104, 1204, 1404, 1504, 1604, 1704, 1904, 2004, 2104, 2404, 2604, 2704, 2804, 2904, 3004, 3204, 3404
	03	084.9587C	84C	17	602	201, 301, 401, 202, 302, 402, 201, 202, 302, 402, 301, 302, 201, 301, 201, 202, 302
					603	201, 202, 302, 402
					606	301, 302
					607	201, 301
					608	201, 202, 302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04	102.8880A	102A	88	605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101, 1201, 1301, 1501, 1701, 1801, 1901, 2001, 2101, 2201, 2401, 2801, 2901, 202, 302, 402, 502, 702, 802, 1002, 1102, 1202, 1402, 1502, 1602, 1802, 2002, 2202, 2402, 2602, 2802, 2902
					609	201, 301, 401, 501, 601, 701, 901, 1001, 1201, 1401, 1501, 1601, 1701, 2001, 2101, 2401, 2601, 2801, 2901, 3001, 3201, 3301, 3401, 202, 302, 402, 502, 602, 702, 802, 1002, 1102, 1202, 1302, 1402, 1602, 1702, 1802, 1902, 2002, 2202, 2502, 2602, 2902, 3102, 3302, 3402
	05	102.7602B	102B	88	602	203, 303, 403, 503, 603, 703, 1003, 1103, 1203, 1303, 1403, 1703, 1903, 2103
					603	203, 303, 403, 503, 603, 803, 1003, 1103, 1203, 1303, 1403, 1503, 1903, 2003, 2303, 2703
					606	203, 303, 403, 503, 703, 803, 1103, 1203, 1303, 1403, 1503, 1603, 1703, 1903, 2503, 2703
					607	203, 303, 403, 503, 603, 703, 803, 903, 1003, 1103, 1503, 1603, 2003, 2203, 2303, 2503, 2703, 2803, 2903, 3003
					608	203, 303, 403, 503, 703, 803, 903, 1003, 1103, 1203, 1403, 1503, 1603, 1703, 1803, 1903, 2003, 2303, 2403, 2503, 2703, 2903
	06	120.7345	120	42	602	204, 304, 404, 504, 604, 704, 804
					603	204, 304, 404, 504, 604, 704, 1004, 1604
					606	304, 404, 504, 604, 804, 904, 1204
					607	204, 304, 404, 504, 804, 1004, 1104, 1304, 2604, 2904
					608	204, 304, 404, 504, 704, 804, 1104, 1604, 2304, 2604
	07	197.1270	197	1	607	3103
	합 계			385	-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3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6.07.08	26.12.08	27.06.08	28.01.10	28.05.08	28.09.08	입주 시
84A	601동 1,3호 604동 1,2,4호 605동 3,5호 609동 3,5호	2층	9	203,405,900	333,994,100	-	537,400,000	10,000,000	16,87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188,090,000
		3층	9	207,758,650	341,141,350	-	548,900,000	10,000,000	17,445,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192,115,000
		4-5층	15	212,149,250	348,350,750	-	560,500,000	10,000,000	18,025,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196,175,000
		6-7층	12	216,502,000	355,498,000	-	572,000,000	10,000,000	18,6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200,200,000
		8-9층	5	217,599,650	357,300,350	-	574,900,000	10,000,000	18,745,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57,490,000	201,215,000
		10-14층	8	218,697,300	359,102,700	-	577,800,000	10,000,000	18,89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57,780,000	202,230,000
		15-19층	7	219,794,950	360,905,050	-	580,700,000	10,000,000	19,035,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58,070,000	203,245,000
		20-24층	5	220,892,600	362,707,400	-	583,600,000	10,000,000	19,180,000	58,360,000	58,360,000	58,360,000	58,360,000	58,360,000	58,360,000	204,260,000
		25-29층	1	221,990,250	364,509,750	-	586,500,000	10,000,000	19,325,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58,650,000	205,275,000
		30층 이상	1	223,087,900	366,312,100	-	589,400,000	10,000,000	19,47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206,290,000
84B	601동 2호 604동 3호 605동 4호 609동 4호	2층	4	199,166,700	327,033,300	-	526,200,000	10,000,000	16,31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184,170,000
		3층	4	203,443,750	334,056,250	-	537,500,000	10,000,000	16,875,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188,125,000
		4-5층	8	207,758,650	341,141,350	-	548,900,000	10,000,000	17,445,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54,890,000	192,115,000
		6-7층	5	212,035,700	348,164,300	-	560,200,000	10,000,000	18,01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196,070,000
		8-9층	6	213,095,500	349,904,500	-	563,000,000	10,000,000	18,15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97,050,000
		10-14층	15	214,155,300	351,644,700	-	565,800,000	10,000,000	18,29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56,580,000	198,030,000
		15-19층	12	215,252,950	353,447,050	-	568,700,000	10,000,000	18,435,000	56,870,000	56,870,000	56,870,000	56,870,000	56,870,000	56,870,000	199,045,000
		20-24층	11	216,312,750	355,187,250	-	571,500,000	10,000,000	18,575,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57,150,000	200,025,000
		25-29층	9	217,372,550	356,927,450	-	574,300,000	10,000,000	18,715,000	57,430,000	57,430,000	57,430,000	57,430,000	57,430,000	57,430,000	201,005,000
		30층 이상	3	218,470,200	358,729,800	-	577,200,000	10,000,000	18,86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57,720,000	202,020,000
84C	602동 1,2호 603동 1,2호 606동 1,2호 607동 1호 608동 1,2호	2층	7	204,238,600	335,361,400	-	539,600,000	10,000,000	16,98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53,960,000	188,860,000
		3층	7	208,629,200	342,570,800	-	551,200,000	10,000,000	17,560,000	55,120,000	55,120,000	55,120,000	55,120,000	55,120,000	55,120,000	192,920,000
		4-5층	3	213,019,800	349,780,200	-	562,800,000	10,000,000	18,14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196,980,000
102A	605동 1,2호 609동 1,2호	2층	4	230,966,460	379,666,855	37,966,685	648,600,000	10,000,000	22,43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64,860,000	227,010,000
		3층	4	235,916,250	387,803,409	38,780,341	662,500,000	10,000,000	23,125,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66,250,000	231,875,000
		4-5층	8	240,866,040	395,939,964	39,593,996	676,400,000	10,000,000	23,820,000	67,640,000	67,640,000	67,640,000	67,640,000	67,640,000	67,640,000	236,740,000
		6-7층	7	245,851,440	404,135,055	40,413,505	690,400,000	10,000,000	24,52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69,040,000	241,640,000
		8-9층	5	247,097,790	406,183,827	40,618,383	693,900,000	10,000,000	24,695,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69,390,000	242,865,00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5%)		중도금 (60%)						잔금(3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총분양가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26.07.08	26.12.08	27.06.08	28.01.10	28.05.08	28.09.08	입주 시
		10-14층	16	248,344,140	408,232,600	40,823,260	697,400,000	10,000,000	24,87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69,740,000	244,090,000
		15-19층	14	249,590,490	410,281,373	41,028,137	700,900,000	10,000,000	25,045,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70,090,000	245,315,000
		20-24층	12	250,801,230	412,271,609	41,227,161	704,300,000	10,000,000	25,215,000	70,430,000	70,430,000	70,430,000	70,430,000	70,430,000	70,430,000	246,505,000
		25-29층	11	252,047,580	414,320,382	41,432,038	707,800,000	10,000,000	25,39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70,780,000	247,730,000
		30층 이상	7	253,293,930	416,369,155	41,636,915	711,300,000	10,000,000	25,565,000	71,130,000	71,130,000	71,130,000	71,130,000	71,130,000	71,130,000	248,955,000
102B	602동 3호 603동 3호 606동 3호 607동 3호 608동 3호	2층	5	225,874,230	371,296,155	37,129,615	634,300,000	10,000,000	21,715,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222,005,000
		3층	5	230,717,190	379,257,100	37,925,710	647,900,000	10,000,000	22,395,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226,765,000
		4-5층	10	235,595,760	387,276,582	38,727,658	661,600,000	10,000,000	23,08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231,560,000
		6-7층	7	240,438,720	395,237,527	39,523,753	675,200,000	10,000,000	23,76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67,520,000	236,320,000
		8-9층	6	241,649,460	397,227,764	39,722,776	678,600,000	10,000,000	23,930,000	67,860,000	67,860,000	67,860,000	67,860,000	67,860,000	67,860,000	237,510,000
		10-14층	20	242,860,200	399,218,000	39,921,800	682,000,000	10,000,000	24,1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68,200,000	238,700,000
		15-19층	15	244,070,940	401,208,236	40,120,824	685,400,000	10,000,000	24,27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68,540,000	239,890,000
		20-24층	9	245,281,680	403,198,473	40,319,847	688,800,000	10,000,000	24,44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68,880,000	241,080,000
		25-29층	10	246,528,030	405,247,245	40,524,725	692,300,000	10,000,000	24,615,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69,230,000	242,305,000
		30층 이상	1	247,738,770	407,237,482	40,723,748	695,700,000	10,000,000	24,785,000	69,570,000	69,570,000	69,570,000	69,570,000	69,570,000	69,570,000	243,495,000
120	602동 4호 603동 4호 606동 4호 607동 4호 608동 4호	2층	4	267,395,490	439,549,555	43,954,955	750,900,000	10,000,000	27,545,000	75,090,000	75,090,000	75,090,000	75,090,000	75,090,000	75,090,000	262,815,000
		3층	5	273,164,310	449,032,445	44,903,245	767,100,000	10,000,000	28,355,000	76,710,000	76,710,000	76,710,000	76,710,000	76,710,000	76,710,000	268,485,000
		4-5층	10	278,897,520	458,456,800	45,845,680	783,200,000	10,000,000	29,160,000	78,320,000	78,320,000	78,320,000	78,320,000	78,320,000	78,320,000	274,120,000
		6-7층	6	284,666,340	467,939,691	46,793,969	799,400,000	10,000,000	29,970,000	79,940,000	79,940,000	79,940,000	79,940,000	79,940,000	79,940,000	279,790,000
		8-9층	5	286,090,740	470,281,145	47,028,115	803,400,000	10,000,000	30,170,000	80,340,000	80,340,000	80,340,000	80,340,000	80,340,000	80,340,000	281,190,000
		10-14층	6	300,441,570	493,871,300	49,387,130	843,700,000	10,000,000	32,185,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84,370,000	295,295,000
		15-19층	2	301,937,190	496,329,827	49,632,983	847,900,000	10,000,000	32,395,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84,790,000	296,765,000
		20-24층	1	303,432,810	498,788,355	49,878,835	852,100,000	10,000,000	32,605,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85,210,000	298,235,000
		25-29층	3	304,964,040	501,305,418	50,130,542	856,400,000	10,000,000	32,82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85,640,000	299,740,000
197	607동 3호	30층 이상	1	877,181,130	1,441,926,245	144,192,625	2,463,300,000	10,000,000	113,165,000	246,330,000	246,330,000	246,330,000	246,330,000	246,330,000	246,330,000	862,155,000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8786A	084.9323B	084.9587C	102.8880A	102.7602B	120.7345	197.1270
약식표기	84A	84B	84C	102A	102B	120	197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목적물의 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금액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한 제곱미터(㎡) 당 분양가격에 의거 잔금 납부 시 정산하기로 하되,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인허가 및 공부정리 절차, 행정명령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상위계획 변경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상호정산 처리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웅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 제곱미터(㎡)까지 표현되며 (면적산출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처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상호정산금액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는 중도금이자 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시행위탁자가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은 잔금 납부시 일괄 납부하여야 함)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차 계약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09.(목) ~ 2026.04.18.(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4.0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제출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26.04.11.(토) ~ 26.04.12.(일) 10:00 ~ 17:00	천안 아이파크시티 5·6 단지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전자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 계약및 사업신청 / 제출처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입력 후 발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세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알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0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6.04.16(목) 10:00~17:00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 단지 건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자격검증 사전서류 제출자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함) 전자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 계약및 사업신청 / 제출처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입력 후 발행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서명으로 가능하나 대리인 계약 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조날인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단, 여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요)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필증)	본인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방법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부동산거래신고 6억 이상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대리인 계약시 추가 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 / 단, 여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요)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국문 원본서류를 제출하며(사본 불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 별도 안내(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안내(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김오개발 주식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회망로46번길 45-29, 2층(용주프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60111-0584022	110111-6740008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김오개발(주)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대출금융기관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시행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 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오개발(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오개발(주)와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수탁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오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오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오개발(주)와 시공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건본주택 위치도	비 고
	■ 건본주택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14번지 ■ 사업부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9-7번지 일원 ■ 분양문의 : 1866-0123 ■ 홈페이지 : https://cheonan-iparkcity5-6.com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천안 아이파크시티 5·6 단지 홈페이지(<https://cheonan-iparkcity5-6.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